

변경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	변경사유
<p>제20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</p> <p>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p> <p>2. CLASS C 수익증권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p> <p>3. CLASS C-e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4. CLASS C-I 수익증권:</p> <p>1)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(삭제)</p> <p>2) 최초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</p> <p>5. CLASS C-F 수익증권:</p> <p>1)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으로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(변경)</p> <p>2)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</p> <p>3)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</p> <p>4) 간접투자기구(변액보험을 포함한다.)</p> <p>5)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(Wrap Account)</p> <p>6)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</p>	<p>제20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</p> <p>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p> <p>2. CLASS C 수익증권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p> <p>3. CLASS C-e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4. CLASS C-I 수익증권: <u>최초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</u></p> <p>5. CLASS C-F 수익증권:</p> <p>1) <u>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</u></p> <p>2)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</p> <p>3)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</p> <p>4) 간접투자기구(변액보험을 포함한다.)</p> <p>5)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(Wrap Account)</p> <p>6)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</p>	<p>CLASS C-I 및 CLASS C-F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변경</p>